

<의안번호 제2006-5호>

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6. 3. 8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상정일자 : 2006. 3. 17

2. 개정이유

-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이 개정·공포(대통령령 제19270호, 2006. 1. 12)됨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여비 등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공무원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출장여행시간이
 - 4시간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를 “1만원”에서 “2만원”으로 4시간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“5천원”에서 “1만원”으로 인상함
 -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의 일비는 “5천원”에서 “1만원”으로 인상하여 지급함

-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따라
 - 숙박비 단가 : 제3호(4-5급)의 25,000원과 제4호(6급 이하)의 22,000원 ⇒ 30,000원으로 인상됨
 - 식비의 단가 : 제3호(4-5급)의 18,000원과 제4호(6급 이하)의 15,000원 ⇒ 20,000원으로 인상됨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6. 1. 1부터 적용(안 부칙)

4. 검토보고 요지

- 동 조례안은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이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·공포(제19270호, 2006. 1. 12)됨에 따라 후속적인 조치사항으로서 근무지내 출장여비 등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
- 그 동안 현실화 되지 못한 근무지내 출장여비에 대하여 현실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사항이 없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